

## 2015년도 일반직(심리상담)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형사정책 전문기관으로서, 갱생보호사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일반직(심리상담)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.

2015년 1월 8일  
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

1

###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

임용예정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	근무예정지	비 고
일반직 (심리상담)	6급	○명	대전광역시	
	7급	○명	경기수원시 경북구미시	

2

### 담당예정 직무

- 출소예정자 사전상담
- 출소자 사회적응 향상 심리상담 및 치료
- 출소자 가족 상담 및 학업지원

3

### 법률적 근거

-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, 제6호
- 공단 인사규정 제16조 제1항

4

### 시험방법

#### ▣ 서류전형 ⇨ 구술면접

##### 가.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 경우 합격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5배수로 조정 가능
- 서류전형 기준

##### <서류전형 기준>

자격요건 자격증, 자기소개서, 경력, 직무관련 분야 학위, 가산특전(직무수행 관련 자격증) 등

##### 나. 2차 시험 : 구술 및 면접(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
- 공단직원으로 사명감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 · 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 및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, 장기근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시험방법 : 개별면접
- 면접 성적으로 합격자 결정

### ■ 공통요건

○ 공단 인사규정 제2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

▶ 공단 인사규정 제21조 ·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○ 직급별 자격요건

직급	자격요건
6급	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(한국상담심리학회) 1급 임상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(한국상담학회) 1급 ⇒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
7급	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이상 상담심리사(한국상담심리학회) 2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전문상담사(한국상담학회) 2급 이상 ⇒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

■ **우대요건**

- 자격증 취득 후 상담실무 경력자 우대

6

**시험일정 및 장소**

모집공고 및 원서접수	서류전형 (합격자발표)	논술·면접 시험	최종합격자 발표
'15. 1. 8.(목) ~ '15. 1. 22.(목)	'15. 1. 28.(수)	서류 합격자 발표 시 공지	추후공지

※ 논술·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함.

7

**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**

가. 원서접수 기간 : 2015. 1. 8.(목)~ 1. 22.(목) (09:00 ~ 18:00)

나. 원서접수 방법

- 온라인 접수

- 채용 홈페이지 : <https://koreha.saramin.co.kr/>

8

**가산특전**

- 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증 소지자

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			
컴퓨터활용능력 1급	1점	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	0.5점

※ 가산특전은 1차 시험인 서류전형에 한함.

- 입사지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공단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안전행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 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를 통하여 공단 직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응시자는 응시표,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.
-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채용 홈페이지(<https://koreha.saramin.co.kr/>) 내 1:1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